조세심판 결정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에 입장하게 하는 것 또는 그에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 2018중○○○ (2018.7.31.)
세 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도 oo군 oo면 소재에서 식물원(이하, “쟁점식물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자로, 쟁점식물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1. 처분청에 “쟁점식물원 입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xx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27. “쟁점식물원 입장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 결정례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ooo종의 화초와 수목이 화단 · 정원 · 생울타리 형태로 식재되어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식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식물원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식물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영리목적 유무, 운영주체의 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식물원 내에는 클래식 자동차 등과 같은 소품이 설치 · 비치되어 있고 드라마와 영화 등의 촬영장소로 소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소품 등은 규모면에서 매우 빈약하여 쟁점식물원은 오락 및 유흥시설로 볼 수 없고, 쟁점식물원 내에서 생활용품카페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하여 그 매출액도 별도로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고, 수도권내에 소재한 다른 사립 유명식물원의 대부분이 쟁점식물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판매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식물원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 받고 이와 별도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드라마 등의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식물원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처분청 의견

쟁점식물원은 식재된 화초 및 수목에 대한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식물원 본연의 지식보급 및 연구 등의 뚜렷한 활동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 팜플렛을 확인해 보아도 쟁점식물원 내 화초 및 수목에 관한 정보제공 보다는 주로 건물과 주변경관 등의 시설소개 내용이 많았으며, 60편 이상의 드라마, 영화, CF촬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8년 4월경 준공한 온실식물원은 이 건 입장용역 제공 및 경정청구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쟁점식물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식물원을 홍보하는 'oo도 관광지도'와 'oo군 관광 가이드북'의 내용에서 쟁점식물원을 식물원보다는 주로 드라마, 영화, CF촬영 명소로 소개하고 있고, 쟁점식물원을 방문한 일반인이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쟁점식물원을 식물원이라기보다 카페로 인식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쟁점식물원의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음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입장료와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식물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4.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조세심판 결정례

5.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이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 5 참조)인바, 쟁점식물원에 식재된 식물의 배치형태와 식물 이외 전시물의 배치 등에 비추어 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보다는 관람자의 휴식이나 오락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식물원에서 식물과 그 생태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온실식물원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준공된 것이자 그 목적이 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비추어 쟁점식물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식물원은 다른 식물원과 차이가 없고 다른 식물원은 입장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 ·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식물원에 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현황 등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식물원과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쟁점식물원의 입장자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입장료는 쟁점식물원의 입장대가인지 과세재화인 음료의 대가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식물원의 입장료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 제 처
www.moleg.go.kr

